

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6조(안전배부등)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 7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계장이 된다.

제 8조(회의록)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하며,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9조(수당)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서산군의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10조(시행규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을 정할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산군읍·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증개정조례

서산군읍·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조 제 1항중 “위원 10인내외”를 “위원 30인이내”로 “군수가”를 “읍·면장이”로 한다.

제 4조의 2중 “1년”을 “2년”으로 한다.

제 4조의 3중 “군수는”을 “읍·면장은”으로 한다.

제 5조 제 2항중 “매분기 말일에”를 “매월 1회”로 한다.

제 9조 제명중 “운영세칙”을 “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 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과 <u>위원 10인내외</u>로서 조직하되, 읍·면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<u>군수가</u> 이를 정한다.</p> <p>② - ③ (생략)</p>	<p>제 3조(구성) ①<u>위원 30인 이내</u>..... <u>읍·면장</u>..... ② -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 4조의 2(위원의 임기) <u>위원의 임기는 1년</u>으로 하되, 필요시 연임할수 있다.</p>	<p>제 4조의 2(위원의 임기) <u>2년</u>..... </p>
<p>제 4조의 3(위원의 해촉) <u>군수는</u>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 이라도 <u>위원을</u>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- 4. (생략)</p>	<p>제 4조의 3(위원의 해촉) <u>읍·면장은</u>..... 1. -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 5조(회의) ① 생략 ② 정기회는 <u>매분기 말일</u>에 개최한다. ③ 생략</p>	<p>제 5조(회의) ① <u>현행과 같음</u> ②<u>매월 1회</u>..... ③ <u>현행과 같음.</u></p>
<p>제 9조 (<u>운영세칙</u>)</p>	<p>제 9조 (<u>시행규칙</u>)</p>

서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

서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7조(대불금 상환등) 제 1호중 "10만원미만은 4회"를 "10만원미만은 3회"로 하고

제 2호중 "10만원이상 20만원미만은 8회"를 "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"로 하며

제 3호중 "20만원이상은 12회"를 "30만원 이상은 12회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